# 第289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4 號
##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4月22日(木)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2.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계속)
3.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4.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

**審査된案件**


1.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이범관・김우남・유성엽・송영선・김성회・나경원・조전혁・홍사덕・이한구・김옥이・이춘식・김충환・진영・주광덕・홍일표・이한성・구상찬・이성헌・오제세・이해봉・김성태・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 2
2.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계속) ····· 2
3.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2
4.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2
5.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
7.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최규성・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창일・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성순・김영록・김영진・김우남・김유정・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김효석・김희철・노영민・문학진・박기춘・박병석・박상천・박선숙・박영선・박은수・박주선・박지원・백원우・백재현・서갑원・송영길・신낙균・신학용・안민석・양승조・오제세・원혜영・유선호・이낙연・이미경・이시종・이종걸・이춘석・장세환・전병헌・전현희・정장선・조배숙・최규식・최영희・최재성・최철국・추미애・홍영표・김낙성・곽정숙・홍희덕・권영길・강기갑・조승수・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 9

o 현안질의 ····· 14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서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이범관·김우남·유성엽·송영선·김성회·나경원·조전혁·홍사덕·이한구·김옥이·이춘식·김충환·진영·주광덕·홍일표·이한성·구상찬·이성헌·오제세·이해봉·김성태·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2.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계속)
3.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4.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10시26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 이상 1건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장관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저처럼 현안질의가 있는 위원들은 현안질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아침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우선 오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현안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김충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안건들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충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충환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송영선 위원, 이범관 위원, 정옥임 위원, 황진하 위원, 윤상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4월 19일, 21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범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5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이 없어 신분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즉 고려인 동포의 범위를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외교적 마찰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고려인 동포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집행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동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송영선 위원님은 고려인동포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등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옥임 위원님은 고려인동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청취하여 구소련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각각 소수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제출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은 동 규정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회원이 되어 재생에너지 관련 선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회원국들과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기술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

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에스토니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오스트리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의 사회보장세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양국 연금제도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제출한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동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절차적 신속성 및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안 10건 및 결의안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들에 관해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좀 들어오시지요.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친 이후에 동 안건의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18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어제 제2차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 송민순 의원안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학진 간사님!

**○문학진 위원** 이 법안 내용에 앞서서, 사무처장 나와 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문학진 위원**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아닙니다, 지금 미주지역회의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 서울에서 하는 회의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문학진 위원** 그 미주지역회의 참석을 해서 처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북한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금강산의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있다. 서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꼭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인사말을 통해서 하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서해 관련해서는 북한을 상정하지 않고 '천안함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하면서 천안함 사태를 같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맥으로 보면 천안함 사건이, 사태가 북측의 행위인 것으로 이거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제가 이번 문제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왜…… 인사말을 통해서 "북한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하고 금강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해 얘기를, 천안함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단을 근거로 해서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대통령 공식 발언 아닙니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저희들 청와대 방문했을 때도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문학진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처장이 천안함 사태, 사건…… 사태라고 그래요, 사건이라고 그래요? 천안함 침몰 그 원인 알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왜 북한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그렇게……

**○문학진 위원**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월 28일 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예단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 커다란 혼란이 생긴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이게 마

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평통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그날 그 지역회의인가 봐요, 미주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네. “국민 대다수는 백령도 앞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이 북한 김정일 정권이 했다고 알고 있다.”, 그날 그렇게 얘기했지요, 이기택 부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문학진 위원**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문학진 위원** 아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학진 위원** ‘예스, 노’만 얘기를 해 봐요. 그렇게 얘기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통의 수석부의장·사무처장, 평통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국가수반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예단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 발언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평화통일 업무 이거를 자문하는 기구의 중요한 분들이 이런 회의에 가서 꼭 북한이 무슨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고 다녀요?

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국민 단결, 국민 통합, 남남갈등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 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발언을 책임 없이 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진 위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이 밝혀지면 그거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지요, 마땅히. 그리고 어떤 조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조사 중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리고 확실한 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국가수반이 하는 얘기와도 다른 얘기를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위원장 박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득 위원**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대답 똑똑히 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저는 분명히 그런 취지의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박진** 잠깐만요.

**○구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왜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박진** 구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구상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동료 위원께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확정을 지은 발언을 하셨어요. 이건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발언 똑바로 하세요. 북한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없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제가 한 말씀……

**○구상찬 위원** 소신을 갖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북한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로 들리도록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문학진 위원** 아니, 사실관계를……

**○구상찬 위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문학진 위원** 구상찬 위원, 사실관계를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구상찬 위원** 북한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진** 예, 알았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

**○구상찬 위원** 아니, 위원님께서 분명히 해야지. 이런 중대한, 중차대한 상황을 말이지요 북한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냐고 그렇게 묻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문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박진**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문학진 위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법안 심사……

**○위원장 박진** 지금 법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예, 법안 심사니까…… 법안 심사 중간에 왜 이런 게 나와요! 법안 심사니까 법안 심사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박진** 예, 법안 심사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문학진 간사 발언해 주시고……

**○문학진 위원**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알겠습니다.

문학진 간사 발언해 주세요.

**○문학진 위원**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께서 제가 무슨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확증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요. 우리 구상찬 위원이 잘못 이해하신 거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는 이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누가,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증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또 아니라는 확증이 나와 있는 것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도 "예단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꼭 이 일을 벌인 것을 예단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게 공식석상에서 평통사무처장 또 평통 수석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한 거지 내가 북한이 아니라고 확증을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위원장 박진** 잠깐만요,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현안질문 시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에 관한 토론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입니다.

**○송영선 위원** 지금 질의를 받으면 안 되지요. 법안에 대한 것만 해야지요.

**○위원장 박진** 법안에 대한 것만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지금 있었던 문학진 위원님과 구상찬 위원님 간의 토론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유감스러운 이유는 사무처장께서 보다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A 위원이 다그치면서 질문을 하면 '예,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B 위원이 또 다그치면 또 같은 식의 답변을 하는, 이런 갈대 같은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박선영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 국회에 출석하지 마세요.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이리저리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정말 사무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쪽도 지금 물증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 가슴 속에는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그렇게 답을 갈대처럼 합니까?

법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조항이 여성자문위원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부의장 중에 여성 비율을 4분의 1 이상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법안이 들어가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 이상이에요. 30% 이상인데 왜 민주평통만 유독 4분의 1로 완화를 합니까?

지금 분명히 헌법상에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할당제 도입을 했고요, 이거는 프리퍼렌셜 트리트먼트(preferential treatment)인 동시에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어서 합헌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도 3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분의 1로 내리면서 그것도 '한다'가 아니라, 당위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안 지켜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성격이 자문위원입니까, 통일운동단체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

**○박선영 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헌법상으로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고요……

**○박선영 위원** 자문기관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법률 위에 헌법 있습니까, 헌법 위에 법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법률이 헌법에 부여된 것을 표현하려고……

**○박선영 위원** 그렇지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은 그것을 내용을 채우고 실용 가능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 헌법에 자문기관이면 법률이 아무리 너절하게 늘어 놨어도 자문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성격 규정 하셔야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박선영 위원** 통일운동단체가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면 자문기구이면 7000명이 자문할 수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자문기구에도 여러 가지 성격의 자문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이 자문기구를……

**○박선영 위원** 그 답변 마시고요, 자문기구가 7000명으로 자문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스, 노'로 답변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자문기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에 표현되고, 법률에 현재 7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문기구……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7000명 이상으로 늘려 놨기 때문에 자문을 못 하는 거고 7000명 이상으로 늘려 놓은 것을 정당화하려다가 보니까 통일운동단체로 지금 변질되는 겁니다. 헌법 성격에 맞게 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됩니다. 통일운동 성격은 빼 버리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상향 조정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현재의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조직의 기구 개정이, 기구의 그러한 정무직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 발의한 법안에 찬동을 하고 개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박선영 위원** 자, 이것 보세요. 사무처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자문회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굳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직을 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민주평통이 점점 더 정치적,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모해 왔어요. 그거를 이 정권이 또 받아서…… 이 정권이 야당 할 때 그 내용 엄청나게 비판했던 정당들입니다. 한나라당, 그거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네가 정권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더 강화해서 정무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점점 더 정치집단화 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단순히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서 직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 업무가 그만치 중요하고 통일 업무가 그만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에 맞는 그런 직이 필요해서, 그런 직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입니

다.

**○박선영 위원** 그런 직이 필요한 것은요……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던 정부입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부총리로 되어 있던 거를 장관으로 내렸던 정부입니다. 통일 업무 어디서 합니까? 통일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통일부를 이끌면서 하는 것이지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일의 직책이나……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일의 직책은……

**○박선영 위원** 자, 한번 들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선영 위원** 들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 예.

**○박선영 위원** 통일부에 대한 소관 업무는 통일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고, 이 민주평통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제 말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예.

그다음에 지방의회의원도 다른 자문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편파적인 구성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자문위원들이 현행 회의 출석수당하고 여비 외에 활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활동경비라는 그 지급 기준과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도 확실하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도록 그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명예직인 자문위원회의 성격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정 정도 용인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지만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마다 수없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활동경비는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 지금 박선영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의장 중에 여성 비율을 지금 현재 20명 이내의 부의장 중에 4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까 30%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25%에서 30%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영선 위원님, 이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송영선 위원** 현재 이 안은 법안소위에서 다 걸러 가지고 올라온 안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안이 아니고 의원이 제출한 법을 법안소위에서 거르고 수정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느냐? 어림잡기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7000여 명 중에서 여성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분의 1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현실성에 가장 가깝게 하다가 보니까 4분의 1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처장님이 4분의 1을 결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법안이라는 걸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거쳤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바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견은 제가 듣겠습니다.

신낙균 위원님!

**○신낙균 위원** 소위에서 한 것을 여기서 다시 거론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최종 의결기구는 이 본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일이고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여성 비율이 극히 적다는 거는 그

동안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부족하게 일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렇게 명문화할 때는 그 자체가 갖는 상징성과 또 의무성도 동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노력한다'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30%라는 것이 권장되고 지켜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제조항도 아닌 거를 이렇게 여기서 현재 평통의 현실에 맞춘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노력한다는 것까지 바꾸자고 하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면 그거는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0%는 해놓고 그리고 일반 자문위원들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 윤상현 위원!

**○윤상현 위원** 일단은 이게 벌써 공청회도 통과했고 또 우리가 토론할 거 다 토론했고 법안심사소위도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표결하는 단계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빨리 표결 처리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우리 간사님,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김충환 위원** 여성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여성 인원이 적은 상태이고 또 이걸 30%로 했을 때는 그걸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오는 또 책임 문제도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5%로 원안대로 하고, 다음 기회에 여성 인력이 좀 늘어날 때는 30%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자문기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사무처장도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정무직 상향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평통사무처를 정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마 그동안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충환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김충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오늘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직을 상실한 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행법에 되어 있는 것이 제16조의3이지요. 그래서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과 같이 수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고 또 월정액 부분도 경비지원을 용인하시겠다, 다만 이것을 실비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반대가 성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그래서 그 의견 전부 오늘 회의록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토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동 안건은 공청회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최규성·강기정·강봉균·강성종·강창일·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성순·김영록·김영진·김우남·김유정·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충조·김효석·김희철·노영민·문학진·박기춘·박병석·박상천·박선

숙·박영선·박은수·박주선·박지원·백원우·백재현·서갑원·송영길·신낙균·신학용·안민석·양승조·오제세·원혜영·유선호·이낙연·이미경·이시종·이종걸·이춘석·장세환·전병헌·전현희·정장선·조배숙·최규식·최영희·최재성·최철국·추미애·홍영표·김낙성·곽정숙·홍희덕·권영길·강기갑·조승수·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최규성 의원 등 66인이 발의한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셨어요?

권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 최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검토보고서 3쪽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남한의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남한의 쌀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남북의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쌀 40만t을 북한에 즉각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2008년에 139만t에 이어 2009년에도 117만t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이 겪은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생존권 확보라는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북한에쌀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결의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쌀 수급 동향을 보면 매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상당 수준의 쌀재고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북한에 대해 국내의 잉여분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쌀 재고량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 당국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나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실제 지원도 남북 당국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 예.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그리고 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이 결의안이 작년 9월 21일 올라왔습니다.

결의안에 시차를 두지 않고, 결의안에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서, 이 보고서를, 검토 안을 언제 만들어 둔 거죠?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지금 만들어 온 게 어떻게 연도별 국내 쌀 수급 동향이 2009년 전망입니까? 2010년 전망이 아니고 작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

지금, 사실 아까 천안함 얘기도 나왔지만 국내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남북관계도 아주 미묘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 못 하는 게 국가 이익 때문에 스스로가 자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주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고, 인도적이지만 줘서 정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지원이라는 인상을 그리고 지원이라는 고마움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 시점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박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촉구 결의안 내용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면 "쌀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장 조절 기능이다", 이거는 앞의 말하고 완전히 상치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쌀 가격이 문제가 있습니까? 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북한에다가 쌀을 좀 주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인도적 지원이 아니지요.

쌀이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굶어죽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면 쌀 한 톨도 반 톨로 나눠 먹는 심정으로 주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결의안 자체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적 지원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함 사고가 나서 6자회담도 사실은 천안함 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개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서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시점에서 대북 쌀 지원 촉구 결의를 국회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지금은 우리가 지원했던 그동안의 쌀들이 군축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의혹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쌀 대북 지원을 지금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두 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윤상현입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도적 지원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고 또 북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4일 밤에 김일성의 98회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불꽃놀이에 60억 원을 썼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 사건에 북한 관련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북한에 대해서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북한 스스로 자세 변화를 본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또 질의하실……

우리 구상찬 위원님!

**○구상찬 위원** 앞에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이나 우리 송영선 위원님처럼 저도 쌀 대북 지원이 인도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또 현재 870만 명이 기아에 직면되어 있는 이런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거의,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거의 준전시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은 정말 시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시기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진**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송민순 위원** 저도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북한에 쌀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논의하는 시점을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이 분명히 된 다음에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하 위원님!

**○黃震夏 委員**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결의안 3쪽에 보게 되면, 마치 쌀 대북 지원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은 좋지만 우리 국내의 무슨 쌀값 안정을 위해서라든지 시장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퇴색되는 그러한 의미들 같은 것 넣은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안 되고 상황이, 북한이 뭐라고 그럴까, 현재 자세를 전부 버리고 확실하게 긍정적인 태도로 나올 때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의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고 그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민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통일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문학진 위원** 장관, 잠깐 있어요.

**○위원장 박진** 잠깐만요. 송 위원님, 이미 인사까지 다 끝났는데……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지, 다음은 외교부 현안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임위 진행시간상……

**○송민순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진**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시겠습니까?

**○송민순 위원** 예.

**○문학진 위원** 그래, 장관 들어와 앉아 봐요.

**○위원장 박진** 그러면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할 텐데, 인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서……

**○송민순 위원** 아니, 그래도 질문을 조금……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문학진 위원** 그래, 통일부장관 들어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진** 통일부장관, 잠깐 들어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장관, 밖에 계시면…… 잠깐 우리 송민순 위원께서 질문 하나 하시고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님 떠나시는데 제가 붙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사실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3월 25일 우리 산림지원단체가 북한, 소위 '겨레의 숲'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강산 지역 조림사업을 위해서 나무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나무 종류에 유실수가 있다.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있으니까 과실이 열리면 북한 사람들이 따먹으니 그 과실수는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통일부 인도지원협력과에서 그 단체에 통보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과실수 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간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아니, 처음 듣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이런 정도의 문제 같으면…… 통일부는,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쌀 지원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이 특정한 시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시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유실수를……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과실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걸로 보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 사실을 파악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송민순 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3월 25일 통일부 인도지원협력과의 한영숙

사무관이 “유실수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께서 자기 휘하에 있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것 잘 모르면서 왜 통일부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송민순 위원**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그 과실수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뒤에 있는 관계자한테 그것 왜…… 장관이 오면서 국장·과장들 왜 다 배석하고 있습니까? 당장 물어보세요,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제가 통일부……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실수는 농업협력에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협력 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산림녹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송민순 위원** 아니, 통일부장관님, 우리도 우리 농촌의 산림녹화를 많이 했어요. 산림녹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보통 나무 심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유실수를 같이 심어서 산림도 녹화시키고 또 과일도 따먹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산림녹화정책을 수십 년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산림이 다르고 농업이 다르니까 안 된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그런 상황도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생각 자체가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건전한 상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송민순 위원** 아니, 당장 생각을 해 보세요. 도대체가 과실수는 농업 부문이고 과실수가 아닌 거는 산림행정이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어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송민순 위원**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수는……

**○송민순 위원** 설명해 보세요,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농업협력 쪽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협력 쪽으로 가는 것이고, 북한의 산림녹화는 또 산림녹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진** 그 부분은 우리 장관께서 확인하셔서 그 규정이 있으면 우리 송민순 위원님께 나중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바로 보내 주세요.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영선 위원** 추가 질문이 아닙니다. 장관님이 좀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주 지역은, 지방 모 자치단체에서는 사과나무를 8억 원어치 보냈습니다. 금강산에는 과실수가 안 되는 이유가 기후 때문에 과실수를 보내도 현실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 침엽수나 과실수 아닌 것을 보낸다는 원칙을 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확인하셔서 하겠다.’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오해가 있을 소지의 답을 하시니깐 사실 파악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주 세세한 부분의 실무적인 차원의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하고 좀더 자세한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통일부장관께서는 지금 송영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두 분께 보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통일부장관께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지금까지 의결된 법률안 및 동의안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등 4건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범관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일 의결된 고려인 지원 특별법안을 통하여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려인 지원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은 우리 정부가 동 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은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며 한·에스토니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우리나라의 국제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률안과 동의안에 대한 장관의 인사말씀이 끝났습니다.

---

**o 현안질의**

(11시05분)

**○위원장 박진** 남은 시간에는 오전 중에 현안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분 계시는군요.

오늘 오전 중에 외교부장관께서 우리 여야 간사들에게 양해를 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찬에 국제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경에는 나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전 중에 질의하실 분들은 전부 질의 순서를 다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대통령 모시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질의 내용과 답변을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윤상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진** 나중에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신청하신 박선영 위원님, 그다음에 송영선 위원님, 또 송민순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이런 순서로 네 분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은 5분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천안함 사고를 국제 전문가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국제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요? 스웨덴의 전문가는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이슬란드 화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이번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유엔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안보리에 가져가게 되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이 함께 다 참여해서 사실조사부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유엔에 가더라도 증거력을 인정하는 데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데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특별한 유엔 차원의 팩트 파인딩 미션(fact-finding mission)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충분한 그런 조사 능력이 있고 더군다나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호주 스웨덴까지 합해서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엔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변 4강이 함께 사실조사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어제 황장엽씨도 “중국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 나중에 북한 편을 들지 않는 데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신문·방송을 통해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난주 핵안보정상회의 시 한미 양국 대통령 간에 대화는 있었습니다. 천안함 관련한 저거였습니다만 전작권 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아직 한미 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직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런 문제를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논의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을 했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이번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전작권 이양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전작권 이양 문제를 결정을 했는데 전작권을 이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한국군의 증강, 군비 증강을 위해서 상당히 무기체계라든지 군사 장비라든지 군 병력의 구조라든지 위기관리시스템의 재검토라든지 이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군비 증강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예산은 또다시 미국의 군 장비를 사오는 데 쓰여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것을 이양해 주면서 정치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고 한국 내에서 골치 아픈 문제에서 발을 뺄 수도 있고, 군인 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로서는 겉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외피를 씌워서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호응을 얻어내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속으로 엄청난 멍이 들었고, 미국은 꿩 먹고 알 먹고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와서 전작권 이양 문제를 재검토하자고 할 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특히 미 국방부가 상당히 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천안함 사고를 통해서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전작권 이양 문제는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부가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국제 정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당일 날 미 국무부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평을 내놨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 정보가 없다는 쪽에 아마 의미를 두고 얘기했는데 현재 한미 양 정부 당국 간의 정보 공유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 특별한 그런 핵실험 징후는 현재로서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사실 미묘한 문제지만 일단 우리가 현안 파악도 중요하지만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책입니다.

1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우리 장관님

께서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때는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한다.”……

안보리에 회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우리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의장 성명’ 끌어낸 게 세 번인데 가장 최근에 2차 핵실험 한 후에 끌어낸 1874호 제재보다 더 강한 것은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874호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비해서 2009년 북한 해외 무기 수출이 딱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장난이다, 별개의 얘기지만 통수권자가 “북한에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응징한다.”라는 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이것은 유엔 정전협정도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단호한 대외 응징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지금 존경하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전협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안보리에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유엔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중요하고 또 한미 양국 간에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우방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를 실효적으로 좀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무기 이전을 얘기하는 이유가, 작년에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PSI 가입이 전쟁행위”라고까지 했습니다, 가입했는데 전쟁도 안 났지만.

PSI 가입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PSI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무기 수출이 두 배로 늘었단 말입니다. 외교통상부가 군사적인 것은 안 하더라도 이 PSI 가입을 했으면 북한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그러나 이런 천안함 사태만이 아니라 정말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구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어떤 대북 제재 결의안을 끌어낸다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더 적극적으로 행정 부처에서 제재안을 찾아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작권 이양 문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전작권’, 이것 한미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기지 이전과도 분명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토야마 정부가 말하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낼 경우에는 전작권 이전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의 일차적인 임무가 북한 급변 사태 시 해병대를 진입을 시켜서 북한 핵무기를 먼저 교란시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8000명을 지금 괌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하토야마 정부가 작년 9월까지 해결할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도 않고, 또 자민당이 낸 안과 달리해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전작권 이양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마치 한미 간에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것처럼 보다는 장관님께서 이것이 이 지역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전략적 유연성 때문에—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양국 간에만 모든 게 다 조율이 된다는 거로는 결정적인 안이 안 나온다는 것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우리가 2012년에 주최하도록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 핵 개발 의지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억지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우리가 2012년에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된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제5위의 원자력 강국이고 우리가 IAEA의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준수하는 모범국가라는 점이 인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한미 간의 신뢰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빨리 조속히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장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질문과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규명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보의 엄청난 결함이 드러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사항을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을 대통령께서도 취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장관께서 4월 18일 날 이후에 TV에 나가셔 가지고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 방향으로 몰고 갔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나중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경우의 가상적 상황에서 외교장관께서 안보리 문제를 바로 제기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외교부는 오랫동안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엄중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장관께서 그러한 외교 안보에 관한 전통을 지금 어겨 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나중에 결과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다시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이 1개~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틀 있다가 4월 11일 ABC방송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판단의 심각한 차이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은 구체적으로 핵무기 숫자까지 하면서 아주 수차에 걸쳐서, 그냥 실수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비핵화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은 이렇게 핵을 가진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 이게 지금 한반도와 같이 좁은 땅에서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핀 없는 수류탄을 든 사람하고 조그마한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차이도 없는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효과는 당연하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소위 우리의 핵연료사이클을 포함한 우리의 핵 능력에 대한, 원자력 능력이 되겠지요, 원자력 능력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두 가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 지도부에서, 국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두 분이 독도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공고화하게 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사이에 좀 더 진솔한 의견 교환이 있고 이래서 잘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방인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토론에서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안보리에 제기하는 문제를 한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정부로서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한 가지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정부로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까 송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시나리오에 가상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중의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클린턴 국무장관이 "핵무기를 1개~6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앞뒤의 텍스트를 볼 때 일반적으로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과 또 과학적으로 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의 숫자를 나눠 가지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런 정보 능력을 염두에 두고 '가졌다', 아니면 '능력이 있다'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또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의 위험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졌다', 아니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정보 판단의 차이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국으로부터 또 설명을 들었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한국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한국은 제5위의 원자력 국가지만 평화적인 핵 이용에 대한 우리의 그런 정책이 확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장께서 독도에 가시고 한 문제는 입법부의 활동에 대해서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송민순 위원님이나 저나 의견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국회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뇌부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런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고하게 또 우리 국회도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우선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상임위를 보면서 소회 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강도를 감싸 주면 강도 보호가 됩니다. 강도를 감춰 주면 범인 은닉이 됩니다. 지금 엄연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또 우리 국민 분들이 느끼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같이 엄중한 시기에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론 분열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천안함 폭침 사건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우선 이 천안함 폭침 조사는 군사비밀에 접근하는 활동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참여한다면, 중국과 북한은 1961년부터 군사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긴밀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비밀이 고스란히 북한군에게 넘어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시키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일반 보통 무슨 선박 침몰 사고가 아니고 접경지대에서 군함이 침몰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군사 안보적으로 매우 중대한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군사비밀 보호라는 중요한 그런 점도 항상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여할…… 그거에는 반대하시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묻지 않으셔도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윤상현 위원** 예, 장관님께서 "모든 옵션을 열

어 놓고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카테고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좀 자꾸 가상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윤상현 위원** 예,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수사적인 접근, 그것은 국제 안보리적인 것……

**○윤상현 위원**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장관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올 옵션(all option), 모든 것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함으로써 외교적인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원칙론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우리 천안함, 군함이 어뢰에 의해서 불시에 이렇게 기습공격을 당했는데 2차대전 종전 이후에 최초의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엔헌장의 문구에 일일이 구애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법과 국제원칙, 관습법 또 우리의 주권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대처를……

**○윤상현 위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원칙은 가지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제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외교부가 지금 TF팀을 구성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TF팀을 구성할 때입니까, 아니면 행동해야 할 때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TF팀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 조직에 따라서 한반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제기구국 또 지역국, 유엔국, 동북아시아국, 미주국 합해서 지금 매일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처하는 그런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관계 부처 간의 조율은 어디서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우리가 안보조정회의에서 하고 있고 또 실무조정회의도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조각배가 아니라 군함이 폭침당했습니다. 군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적에 의해 완전히 폭격당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폭살 당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에게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전 이맘때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혹시 김정일의 방중과 천안함 사태의 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뭐 구체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김정일의 경호 선발대 한 20여명이 지난 3월 17일경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또 중국공산당의 의전팀이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단동에 가서, 단동으로 출발했음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지요?

답변 잘 하십시오. 만약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시면 장관님만 모르고 다른 기관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하여튼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니까 부인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

**○구상찬 위원** 자, 그러면 김정일의 경호 선발

대가 3월 17일경 북경에 들어갔고 중국공산당의 의전팀이 20일에서 25일경에 단동으로 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중국과 북한이 김정일의 방중을 기정사실화하고 25일에서 27일 사이에 북경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출발 직전에 이 천안함 사태가 터져 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김정일의 방중은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고, 지난번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에서 약속했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해서 방중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안함 사태 때문에 6자회담이 무산이 됐고, 계획이 무산이 됐고 또 6자회담이 무산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천안함 침몰과 같은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그런 사항과, 6자회담이란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과정)인데 그것을 이렇게 연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 다시 방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렇게 계획적으로 타임라인을, 시간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확신은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중국 외교부에서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 해서 오히려 방중을 연기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뭐 그렇게 꼭 분석을 해 가면서 상황을 주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얼마 전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1개에서 6개 정도의 핵무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북한은 또 얼마 전에, 바로 어제입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핵군축 노력을 하겠다 또 확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어제 대변인도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다시 천안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1999년의 서해교전, 그리고 2002년의 연평해전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서로 보복 관계입니다.

**○鄭玉任 委員** 보복이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리고 바로 작년에 대청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수차례 선언을 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리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전혀 없는 가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이미 조사단에 의해서 '어뢰에 의한 폭파'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뭐 잠정적 결론까지는 아닙니다.

**○鄭玉任 委員** '잠정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만큼의 방증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83년의 아웅산사건이라든지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 때의 그 전후한 북한의 행태를 보면 지금 천안함 사태 후의 북한의 행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혀 없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말씀이 나왔지만 유엔에 가져갔을 때에 유엔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한 짓과 똑같이 보복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다시는, 그것도 역시 중요합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식의, 역시 '만약이라는 전제하에'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을 벌인다면 북한이 받아야 될 엄청난 대가가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鄭玉任 委員**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체제경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과 같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엄청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게 또 우리의 한계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4000만의 모든 생명과 안보가 중요한데 북한 정권은 김정일과 그 주변부만 중요하고 나머지 인민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전략에 딜레마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대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미동맹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정부가 분명히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1991년에 대한민국에 배치하고 있던 전술핵무기 다 철수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 전술핵무기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거 지금 폐기를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 폐기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운용 중인 전술핵무기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토마호크는 아직……

**○鄭玉任 委員**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지금 "1개에서 6개 갖고 있다." 그러고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고, 설사 6자회담이 열린다 그래서 저런 천인공노할 만행까지도, 만약에 천안함이 사실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과연 그러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장관은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여러 분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전술무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은 고도의 군사전략의 문제이고 또 미국의 국제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사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전술핵무기 다시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 국제정세 또 오바마 대통령의 핵에 관한 정책 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포한 현재에 있어서 그 문제는 한미 간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본 위원이 국제정치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장관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백악관의 이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 인사가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미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움직이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그 원인이 규명

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의 방중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사태에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함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강화입니다, 공염불에 불과한 말로만의 강화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 예, 정옥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지난 3월 초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한해서 국제결혼 금지를 시킨 것을 아시지요, 사건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상득 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 여성들이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한 15만 명이 입국해 와 있고, 10만 명 이상이 결혼 신고도 안 하고 좀 그런 애매한 상태로 와 있고,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는 뭐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게 참 부끄러운 거는, 인신매매를 한다고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국제결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 후진국에, 개발도상국에 많은 원조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자국 여성들을 이렇게 결혼이 아니고 인신매매한다고 해서 금지시켰다면 상당히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 우위 증진에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니까 말이지요, 결혼 중개업체가 1300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난립이 돼 가지고, 조금 여기서 상세히 내가 들어 보니까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지만 대외적인 문제는 결국 외통부에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떤 경우를, 어렵더라도 이 캄보디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전체 문제를, 저희들은 국제적인 문제 또 대내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를 좀 총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이번 캄보디아 문제를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국무총리실 주재하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영사담당 대사가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서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각 관계부처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대성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득 위원** ‘구체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미안하지만 내가 한 가지 지적하려는 것은, 저보고 사실 좀 훈센 총리를 좀 만나서 이 문제를 해 가지고 훈센 총리에게 이 조치를 좀 취하해 달라고 얘기가 왔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안이 없이 저보고 얘기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국제결혼하는 여성을 좀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정말 구체적인 안이요, 말씀은 하시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좀 검토할,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미 외교부에서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지침을 냈습니다. 그 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점, 그다음에 '아직 한미 당국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확고한 그건 입장이신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상현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 주셨고요, 천안함 합동조사단에 중국·러시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남경필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러시아에게 우리 군사기밀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국제조사단이 같이 참여를 하지요? 거기 이제 미국·영국·호주·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만, 저는 특히 영국·호주·스웨덴 이 국제조사단에게 군사기밀에 접근하는 그런 것을 허가하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접경지대에서 군함, 우리 군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선박의 침몰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주권적인 그런 주권에 관한 문제, 또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문제, 또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러시아·중국까지 포함한, 소위 흔히들 얘기하는 국제적인 팩트 파인딩 미션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제가 '그런 입장을 지금 바꾸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포함된 이 국제조사단에게도 군사기밀의 접근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접근을 못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러시아, 저는 일본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 조사단이 만약에 합류가 된다 하더라도 군사기밀에는 어차피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장관께서는 18일, KBS에 출연을 하셔서 "이게 만약에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건 유엔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 또 중국·러시아까지 포함해 다각적·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런 해결 방안들, 유엔안보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아까, 다시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군사기밀에 대한 철저한 접근금지라는 이러한 우리 조치 속에서 이러한 6자회담의 당사자국들을 참여시킨다면 오히려 국제적인 신뢰도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또한 유엔안보리에서의 이러한 절차를 해 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공신력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고 또 앞으로 사태의 진전을 봐 가면서,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는 방안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 죽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에 법안, 동의안, 그리고 현안에 관한 질의가 전부 있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4월 임시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8대 국회 상반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가 5월 하순에 종료됩니다. 그 5월 중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오늘의 회의가 18대 국회 상반기의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으로 외교통상통일 분야의 많은 현안을 심의하고 처리하고 또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외교통상부 그리고 통일부 또 민주평통자문회의의 활동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과 또 격려 어린 지도 편달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구희권 수석을 비롯한 상임위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20인)**

| | | | |
|---|---|---|---|
| 구상찬 | 권영세 | 김충환 | 남경필 |
| 문학진 | 박선영 | 박 진 | 송민순 |
| 송영선 | 신낙균 | 윤상현 | 이범관 |
| 이상득 | 이춘식 | 정동영 | 정옥임 |
| 정의화 | 진 영 | 홍정욱 | 황진하 |

**○청가 위원(1인)**

정진석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구희권 |
| 전문위원 | 권기원 |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 | |
|---|---|
| 장관 | 유명환 |
| 기획조정실장 | 임재홍 |
| 재외동포영사국장 | 백주현 |
| 북미국심의관 | 안영집 |
| 국제법률국심의관 | 정동은 |
| 국제경제국심의관 | 한동만 |
| 북핵외교기획단부단장 | 윤순구 |

통일부

| | |
|---|---|
| 장관 | 현인택 |
| 기획조정실장 | 김호년 |
| 통일정책실장 | 김천식 |
| 교류협력국장 | 김남식 |
|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 최보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
|---|---|
| 사무처장 | 김병일 |
| 통일정책자문국장 | 김점준 |
| 정책연구위원 | 김영구 |